



제428 회국회(임시회)
제1 차보건복지위원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학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0156호)

2025.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대상 확대	2

I. 개요

1. 이학영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0156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이학영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5. 4. 28.
- (3) 회 부 일 : 2025. 4. 2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에 대하여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고 있음.

하지만, 마약류를 소지, 운반, 관리, 매매, 수수 등 유통에 관여한 마약범죄의 경우에는 마약류의 폐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수강명령 등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마약범죄 근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마약류를 투약, 흡연, 섭취한 사람뿐만 아니라 소지, 운반, 관리, 매매 등 유통에 관여한 마약사범에 대해서도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제1항).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대상 확대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현행법을 위반하여 마약류를 소지, 운반, 관리, 수수 또는 매매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 보호관찰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하려는 것임¹⁾.

현행	개정안
제40조의2(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은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투약, <u>흡연 또는 섭취한</u> 사람(이하 이 조에서 “마약류사범”이라 한다)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 ⑨ (생략)	제40조의2(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 ----- <u>흡연, 섭취, 소지, 운반, 관리, 수수 또는 매매한</u> ----- ----- ----- ----- ----- ----- ② ~ ⑨ (현행과 같음)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마약사범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소지, 운반, 관리, 수수 또는 매매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은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마약류사범”이라 한다)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40조의2는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을 “마약류사범”으로 약칭하고,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 1년간 보호관찰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재 교정시설, 보호관찰소 또는 교육 위탁기관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수강명령과 이수명령 대상자에 대한 재범예방 교육 및 재활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²⁾, 최근 3년간 수강명령·이수명령을 병과받은 마약류사범의 수는 증가하는 추세임.

< 최근 3년간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대상자 추이 >

(단위: 명)

	2022년	2023년	2024년
전체 마약류사범	18,395	27,611	23,022
수강명령·이수명령 대상자	3,206	4,474	5,866
교정본부 이수명령	848	1,341	2,048
보호관찰소 수강·이수명령	2,358	3,133	3,818

* 자료: 대검찰청, 법무부

② 법원은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이하 “수강명령”이라 한다)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併科)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⑧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은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집행에 관한 업무를 제51조의2에 따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위탁할 수 있다.

□ 그런데 현행법 제40조의2의 “마약류사범”은 마약류를 투약·흡연·섭취한 이른바 투약사범만 해당하는바, 마약류를 소지, 운반, 관리, 수수 또는 매매한 사람은 현행법에 따른 보호관찰 처분 및 수강 명령·이수명령 병과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 이에 개정안은 최근 마약류 유통과 관련된 범죄행위(밀수·밀매·소지)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³⁾ 마약류를 소지, 운반, 관리, 수수 또는 매매한 사람에 대해서도 보호관찰 처분을 하거나 수강 명령 및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교육을 통해 재범을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는 적절하다고 보임.

< 2023년 범죄유형별 단속 현황 >

(단위: 명, %)

	밀조	밀수	밀매	밀경	투약	소지	기타	합계
합계 (점유율)	4 (0.0)	1,235 (4.5)	7,904 (28.6)	3,081 (11.2)	10,899 (39.5)	1,859 (6.7)	2,627 (9.5)	27,611 (100)
대마	0	236	1,057	129	1,936	342	385	4,085
마약	0	74	250	2,952	335	141	218	3,970
향정	6	925	6,597	0	8,628	1,376	2,024	19,556

* 자료: 2023년 마약류범죄백서(대검찰청)

□ 다만, 현행법 제3조부터 제5조는 마약류 관련 위반행위의 태양을 “소지, 운반, 관리, 수수, 매매” 외에도 “재배, 제조, 사용, 소유, 수출입, 매매의 알선, 성분 추출, 보관, 처방전 발급, 제공” 등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고⁴⁾, 이러한 행위 태양은 현행법상의 금지규정에서 대체로

3) 밀수·밀매·소지사범은 (‘21년) 5,250명 → (‘22년) 5,916명 → (‘23년) 10,998명으로 증가함.
(자료: 2021년, 2022년, 2023년 마약류범죄백서 - 대검찰청)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의 사용
2.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種苗)를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헤로인, 그 염류(鹽類)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 소유, 관리, 수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운반, 사용,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병렬적으로 나열되어 있어 법정형에도 차이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5), 마약류의 소지·운반·관리·수수·매매에 한정하지 않고 현행법에서 금지하는 전체 행위 태양을 포괄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4.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제조, 수출입,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또는 사용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5.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하거나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흡연 또는 섭취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소지·소유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7. 대마를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
 -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情)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11. 제4조제1항 또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
 - 가.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
 - 나.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
 - 다.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
 - 라. 제5조의2제5항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

제5조(마약류 등의 취급 제한) ① 마약류취급자는 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 법에 따라 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소지·소유·운반 또는 관리하는 자는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제3조제2호·제3호, 제4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2.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수출입·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4.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한 자 또는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5.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한 자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7.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조제·투약·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수수·조제·투약·제공한 자

법무부의 의견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안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마약류사범”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를 소지하고 운반하는 등의 유통 사범에게도 재범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수강 또는 이수하도록 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지원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함.
- (법무부) 마약류를 투약, 흡연, 섭취한 사람뿐만 아니라 유통에 관여한 사람에 대해서도 마약류의 폐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마약범죄를 근절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공감함. 다만, 개정안은 “마약류사범”의 행위에 마약류 유통에 관여한 일부 범죄 태양만을 추가하고 있는데,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현행법에서 금지하는 전반적인 범죄 태양을 포함하는 방안을 보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마약류사범”의 전제인 현행법 제3조부터 제5조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의 태양은 ‘소지, 운반, 관리, 수수, 매매’ 외에도 ‘재배, 제조, 사용, 소유, 수출입, 매매의 알선, 성분 추출, 보관, 처방전 발급, 제공’ 등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음.
 - 개정안에 따라 ‘마약류사범’에 포함된 행위 태양과 포함되지 않은 행위 태양은 현행법상의 금지규정에서 대체로 병렬적으로 나열되어 있고 법정형에 차이가 없는데, 일부 태양에 대하여만 의무적으로 수강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할 경우 형평에 반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04